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2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 강훈식·박홍배·김병기

김남근 • 강준현 • 문진석

천준호 · 김교흥 · 김승원

박상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(이하 "사업보고서등"이라 함)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.

최근 기후변화,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.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, 미국,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,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, 유럽연합은 2025년, 미국은 2026년, 일본은 2027년, 영국은 2026년, 호

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.

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). 한편,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,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(단,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)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.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기업가치에 단기·중기·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9조의2 및 제1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59조의2(기후전략 등 목표 수립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 보고서에 제1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재하는 기후전략 및 온실가 스 감축 목표는 「파리협정」 및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녹색성장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감축목표에 부합하게 수 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9조의3(회사의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)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1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정부는 인증 기준・절차 및 등록인증기관의 기준 요건 등에 관한

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160조 후단 중 "제3호 및 제3호의2"를 "제3호·제3호의2 및 제5호" 로 한다.

제449조제3항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하고,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3. 제15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59조제 2항제5호 및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 도의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.

② 이 법에 따라 제15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사업보고서에

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, 최초 1개 사업연도와 관련한 제159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, 제429조, 제444조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「민법」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
| 제159조(사업보고서 등의 제출) | 제159조(사업보고서 등의 제출) |
| ① (생 략) |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| 2 |
|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| |
|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대통령 | |
|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| |
| 여야 한다. | |
| 1. ~ 4. (생 략)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5. 기업가치에 단기・중기・장 |
| | 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|
| | 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|
| |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|
| | 하는 사항_ |
| <u>5.</u> (생 략) | 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 |
| ③ ~ ⑦ (생 략) |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제159조의2(기후전략 등 목표 수 |
| | 립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|
| | 이 사업보고서에 제159조제1항 |
| | 제5호에 따라 기재하는 기후전 |
| | 략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|
| | 「파리협정」 및 「기후위기 |
| |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 |
| | 장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부문 |

<신 설>

<u>별 감축목표에 부합하게 수립</u>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59조의3(회사의 지속가능성 사항 등에 대한 인증) ①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 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보고 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 다.

- ② 정부는 인증 기준·절차 및 등록인증기관의 기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160조(반기・분기보고서의 제 제 출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 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"반 기보고서"라 한다)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 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"분기보 고서"라 한다)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 되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 세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 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 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 우 제159조제2항(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 3호의2는 제외한다) • 제4항 •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| 세160조(반기·분기보고서의 제 |
|--------------------|
| 출)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<u>제3호 · 제</u> |
| <u> 3호의2 및 제5호</u> |
| |
| |

제449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~ 8의2. (생 략)
<신 설>

<u>8의3.</u> · <u>8의4.</u> (생 략)

9. ~ 21. (생 략)

④ (생 략)

| 제449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같음) |
| ③ |
| |
| |
| 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 |
| 8의3. 제159조의3제1항을 위반 |
| 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|
|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자 |
| <u>8의4.·8의5.</u> (현행 제8호의3 |
| 및 제8호의4와 같음) |

9. ~ 21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